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2000. 2. 19
기획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위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2월 8일

○ 회부일자 : 2000년 2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1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0. 2. 18)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의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총무과장 한 문 석)

가. 제안이유

-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현행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개선·보완하여 퇴직준비휴가제를 현실에 맞도록 하고
-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삽입규정을 명문화 하는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제23조 제2~3항)
 - 임신중 출산전후 60일간 특별휴가를 허용하도록 강제규정
 - 출산후 1년간 1일 1시간 육아시간 허용 (신설)
 - 보건휴가를 생리기와 임신중 검진을 위해 매월 1회 허용
- 20년간 이상 장기근속 및 퇴직준비 휴가제도 개선 (제23조 제7항)
 - 1회에 한하여 10일간 ⇨ 재직기간중 10일간으로 개정
 - 퇴직준비 휴가대상에 조기퇴직자 포함
-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삽입규정 명문화 (제24조)
 - 30일 이상 계속 및 경조사 휴가는 공휴일을 포함일수에 포함
 - 그외의 휴가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중 만)

-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를 검토한 바
 -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출산 전후 60일간의 출산휴가 허가를 강제규정 하였고
매 생리기와 임신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보건휴가와 생후 1년 미만을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주도록 하는 것이며
 -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제도를 재직기간중 10일간으로 개선함과

- 경조사 휴가중 사망과 탈상의 경우 “직계존속”을 세분화하여 증조부모·조부모, 외증조부모·외조부모로 하려는 것임.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대통령령 '99. 12. 7)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명예퇴직자의 퇴직준비를 탄력적 운용하려는 것 등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매 생리기마다 1일”을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 제4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7항(중전 제6항)중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 중에”로 하고, 동조 제9항(중전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3조제12항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 4. (생략)</p> <p>5. <u>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u>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p> <p>6.~8. (생략)</p>	<p>제22조(공가)----- ----- ----- ----- -----</p> <p>1.~ 4. (중전과 같음)</p> <p>5. <u>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u> ----- -----</p> <p>6.~8. (중전과 같음)</p>
<p>제23조(특별휴가)①(생략)</p> <p>②<u>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u></p> <p>③<u>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u></p>	<p>제23조(특별휴가)①(중전과 같음)</p> <p>②<u>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u></p> <p>③-----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p>
<p>< 신 설 ></p> <p>④·⑤ (생략)</p>	<p>④<u>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u></p> <p>⑤·⑥ (중전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p>

⑥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⑦ (생략)

⑧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 및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생략)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 재직기간
----- 중에 -----

⑧ (종전의 제7항과 같음)

⑨ -----정
-----년퇴직이나 -----
----- 명예퇴직 또는 조기
-----퇴직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은 -----

⑩ (종전 제9항과 같음)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
-----사 휴가의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제23조제12항관련) 경조사별휴가일수표			[별표 3] (제23조제12항관련) 경조사별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수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7	결 혼	본인	7
	자녀	1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처)	1	출 산	배우자(처)	1
사 망	배우자	7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조부모·외중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2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조부모·외중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6610호, 99. 12. 7)

: 후면참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공무원법부규정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대 중
1999년 12월 7 일

국무총리 김 중 필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김 기 재

○대통령령 제16,610호
국가공무원법부규정중개정령

국가공무원법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중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를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4항 "현업공무원"을 "현업공무원·농"으로 하고, 상호보충 "현업기관의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현업기관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19조제6호중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5조"를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대생리가다 1일"을 "대생리가의 임신한 경우 집진을 위하여 매월 1일"로 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의가하여야 한다.

⑥성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제20조제7항(중전의 제6항) 전단중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행정기관의 장"으로, "1회에 한하여"를 "재직기간중에"로 하고, 동조제8항(중전의 제7항)중 "명목퇴직을 할 공무원"을 "명목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3조제1항·제2항중 "총무처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단서중 "총무처장관이 외부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관련)

구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합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
	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조부모·외중조부모·외조부모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중조부모·조부모·외중조부모·외조부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양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부규정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책임운영기관(責任運營機關)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며, 경조사(慶弔事)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